

2016. 2월 개정 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 법인과세 부분

2016. 2. 12.자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및 2016. 2. 5.자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중 법인과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

공동경비의 배분기준을 다양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보완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기준 - 출자공동사업자간: 출자비율 - 비출자공동사업자간 - 특수관계자간: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중 선택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 - 비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자간 약정에 따른 비율	■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 (좌 동) - 특수관계자간: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자산가액(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 보유시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 비율 중 선택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 (좌 동)

위 개정규정은 2016. 1. 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세부사항 규정

법인세법 제27조의 2 제2항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 적용대상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전액 비용 불인정 *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 대상인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함(2016년도의 경우는 2016. 4. 1.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 시에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양식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 운행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 필요 ■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부사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2에서 규정 예정) -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추가 :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 - 업무용 사용 범위 : 거래처 방문, 관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 등 -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 임차방법별로 구분 - 리스차량 :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 렌트차량 : 렌트료의 70%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위 개정규정은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또는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16년의 경우 운행기록은 2016. 4. 1.부터 작성하며, 2016. 4. 1.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업무사용비율이 적용됩니다.

3.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근거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6항은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신설된 규정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6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 적용대상 비용: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 * 지출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지급명세서 • 적용대상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의무는 없음

위 개정규정은 20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4. 세법해석 관련 질의회신 절차 보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등이 진행 중인 사항에 관련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도 기획재정부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세법해석 관련 질의회신 절차 • (원칙) 기재부에 제출된 세법해석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이송·해석 • (예외) 다음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해석 가능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질의 - 국세청의 세법해석에 대한 재질의 - 세법이 새로 제정·개정된 사항에 관한 질의 〈추 가〉	■ 세법해석 관련 질의회신 절차 보완 • (좌 동) 】 (좌 동) - 그 밖에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위 신설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225호

(2015. 12. 24.)에서는 해당 신설규정의 주요 내용을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을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해석하여 회신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신설규정은 2016. 2. 5.부터 시행됩니다.

5.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 명확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11 제1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세무조사범위의 확대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 • 다른 과세기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구체적 세금탈루 혐의가 존재 -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	■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 명확화 - 체적 세금탈루 증거자료 확인 - (좌 동) - 조사대상기간의 특정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위 개정규정은 2016. 2. 5.부터 시행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46	E-Mail. hjikim@shinkim.com
● 정인화 선임공인회계사	TEL. 02 316 4219	E-Mail. ihchung@shinkim.com
● 임종현 세무사	TEL. 02 316 4618	E-Mail. jhim@shinkim.com
● 이정진 전문위원	TEL. 02 316 4417	E-Mail. jjlee@shinkim.com
● 하병만 전문위원	TEL. 02 316 1689	E-Mail. bmha@shinkim.com